

화정교육통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55 http://전주화정초등학교.kr (교무실 270-8403, 행정실 270-8474)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더불어 성장하는 화정 교육

2023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세운 앞으로의 계획과 학생 출결 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2. 출석 인정 결석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서식 1] 학부모 의견서 제출

구 분	대 상	출석인정일수
_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바.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 2) 담임 또는 학부모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
 - 3)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여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 사.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2)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 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 서류]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확진자 (양성)	격리 권고 기간(5일)	· 입원 통지서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음성)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당일 출석 인정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3)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 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 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및 접종으로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 1)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 석 처리
 - 2)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3)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시	ł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서식 2]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식 2]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확인된 학생
 - 2) 등교 시간 때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 3)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대신함

4. 미인정 결석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특기사항에 사유 압력)
-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마.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바.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 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5. 기타 결석

-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기타 결석 승인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6.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가.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 나. 단체교환학습: 2주일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 인정)
- 다. 교외체험학습
 - 1)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제외)
 - 2) 교외체험학습은 1일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교시 수업 운영일 제외)
 -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은 사용불가

- 4) 교외체험학습 규정에서 허가된 일수 경과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6)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3]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5]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 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4]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6]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7) 국외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 [서식3]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4]교외체험학습보고서, 국외체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3) 중 하나만 제출
 - (1)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8)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형제, 자매인 경우만 허용)
 - (3) 성인과 아동의 관계가 친인척, 지인일 경우 성인 1인당 아동 1인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7. 지각, 조퇴, 결과

- 가. 지각: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조퇴: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다. 결과: 수업시간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 라.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마. 같은 날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처리함.

8.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가. 출결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3일 내 최종 확인한다.
- 나. 출결기록: 담임(전담)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 (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한다.
- 다. 출결처리: 담임(전담) 교사의 출결 기록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를 확인 후 담임교사 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또는 등교 개학 후 출결 처리가 가능하다.
- ※ 학부모 의견서, 결석계, 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u>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u>에 탑 재합니다.
- ※ 학교종이 제출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출결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3. 9. 1.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김 화 자